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병주 의원 외 12명 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전 병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병주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교육기본
법』및『유아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은

국가 인재를 육성함에 있어 그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유
아교육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바,

취학 전 1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취학 전 1년”을 의무교육기간에 포함시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유치원 명칭은 일제강점기때 독일어 킨더가르텐 (kindergarten)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생겨난 개념인바,

유치원을 정의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를 개정하여 현재 학교로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공교육 기관으로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